

# 인재개발원 규정

2003. 5. 12 제정

2018. 6. 20 개정

제 1 조 (목적) 이 규정은 이화여자대학교(이하 “본교”라 한다) 인재개발원(이하 “개발원”이라 한다)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(개정 2018.6.20.)

제 2 조 (직무) 개발원은 본교 재학생 및 졸업생이 사회진출에 필요한 자질과 능력을 개발하고, 그 함양된 지도력을 바탕으로 국가사회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 (개정 2018.6.20.)

1. 취업 및 진학과 관련한 진로 상담
2. 취업 및 부직을 지원하기 위한 구인·구직간의 연계
3. 평생경력 개발을 위한 정보 제공 및 관리
4. 진로지도와 관련한 교육과정 개발·실시 및 교재 개발
5. 진로교육 평가 및 평가 자료의 개발
6. 진로 관련 자료의 간행
7. 기타 개발원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업 (개정 2018.6.20.)

제 3 조 (원장) ①개발원에 원장을 두되, 원장은 본교 부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부장 이상의 직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. 다만,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가로 임명할 수 있다. (개정 2015.2.6., 2018.6.20.)

②원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개발원의 업무를 관장한다. (개정 2010.7.7., 2018.6.20.)

제 4 조 (부원장) ①개발원에 부원장을 둘 수 있다. (개정 2018.6.20.)

②부원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개발원의 소속 교원, 차장 이상의 직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. 다만,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가로 임명할 수 있다. (개정 2015.2.6., 2018.6.20.)

③부원장은 원장을 보좌하고 원장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 5 조 (팀장) 개발원에 팀장을 둘 수 있다. (개정 2012.10.25., 2018.6.20.)

제 6 조 (삭제 2012.10.25)

제 7 조 (연구원 등) 개발원에 연구원 또는 직원(이하 “연구원 등”이라 한다)을 둘 수 있다. (개정 2012.10.25., 2018.6.20.)

제 8 조 (운영위원회) ①개발원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재개발원 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 (개정 2018.6.20.)

②위원회는 교무처장, 기획처장, 학생처장, 원장, 부원장 및 본교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는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, 위원장은 원장이 된다. (개정 2005.2.11)

③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임명

인재개발원 규정

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 (개정 2018.6.20.)

제 9 조 (위원회의 직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개발원의 사업계획 및 사업보고에 관한 사항 (개정 2018.6.20.)
2. 개발원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(개정 2018.6.20.)
3. 개발원 규정의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(개정 2018.6.20.)
4. 기타 개발원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(개정 2018.6.20.)

제 10 조 (위원회의 회의) 위원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 11 조 (인력개발산학협의회) ①기업과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개발원에 인력개발 산학협의회(이하 "협의회"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 (개정 2018.6.20.)

②협의회는 원장, 부원장 및 원장이 제청하여 총장이 위촉하는 30인 이내의 교내외 인사로 구성한다.

③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

제 12 조 (사업 계획 및 보고)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장에게 사업 연도 개시 후 1월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.

1. 전년도 사업보고서 및 결산서
2. 당해 연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
3. 운영위원 명단

(개정 2010.7.7)

제 13 조 (경비 및 현금출납) ①개발원의 경비는 본교의 전입금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. (개정 2018.6.20.)

②개발원의 현금출납 사무는 총무처 회계팀에서 담당한다. (개정 2018.6.20.)

제 14 조 (운영세칙) 개발원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원장이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총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한다. (개정 2018.6.20.)

부칙(2003. 5. 12. 제정)

이 규정은 200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(2005. 2. 11. 개정)

이 규정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(2010. 7. 7. 개정)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(2012. 10. 25. 개정)

이 규정은 201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(2015. 2. 6. 개정)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(2018. 6. 20. 개정)

이 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